

부조리 신고 등에 관한 운영규정<사규명 개정 2013.10.25>

제1장 총칙

제정 2006.11.23
개정 2006.12. 8(개폐정리)
개정 2011. 6. 9(개폐정리)
개정 2012.10.25
개정 2013. 4.30(개폐정리)
개정 2013.10.25
개정 2014. 7.31
개정 2015. 6.30(개폐정리)
전부개정 2015.10.23.
개정 2016.11. 2
개정 2020. 3.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부조리행위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개정 2020. 3.11. >

가. 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사의 예산사용, 공사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임직원 행동강령”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외부인을 말한다. < 개정 2020. 3.11. >

가. 공사에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또는 피신고자 소속기관 등을 지도·감독하는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에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 <개정 2020. 3.11>

다.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 개정 2020. 3.11. >

5.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를 의미한다. <신설 2020. 3.11. >

가.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신설 2020. 3.11. >

나.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신설 2020. 3.11.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신설 2020. 3.11. >

라.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

별지급 <신설 2020. 3.11. >

마.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신설 2020. 3.11. >

바.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그 명단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신설 2020. 3.11.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신설 2020. 3.11. >

아. 인·허가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설 2020. 3.11. >

자.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신설 2020. 3.11. >

제3조 (사장의 책무) ①사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조리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조리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장은 부조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부조리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조리행위 신고자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임직원은 법령·규정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조리행위, 임

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2020. 3.11. >

②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부조리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조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사,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부조리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은 상근감사위원으로 한다.

②사장은 부조리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조리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조리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조리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외부위탁사이버센터 포함)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

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조리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조리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관련 범죄고발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⑥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

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책임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조리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신설 2020. 3.11. >

⑧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기존 제7항에서 이기 2020. 3.11. >

⑨부조리신고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는 별표 1과 같다. < 기존 제8항에서 이기 2020. 3.11. >

제8조(신고의 취하) ①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조리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개정 2020. 3.11. >
2.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공사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 3.11. >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개정 2020. 3.11. >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개정 2020. 3.11. >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조리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개정 2020. 3.11. >
 7. 신고내용이 부조리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20. 3.11. >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조리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개정 2020. 3.11.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조리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신고자의 동의 없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임직원에게 징계(별표 3)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설 2020. 3.11. >

③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별지서식

제1호)를 제출받아야 한다.< 기존 제2항에서 이기 2020. 3.11>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조리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부조리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사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별표 3)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 3.11]

제12조 < 삭제 2020. 3.11. >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신고자 보호) ①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규정 제10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2. 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3. 규정 제12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4.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해당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함이 필요한 경우

②책임관은 제1항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별표 3)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 3.11.]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사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조리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게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개정 2020. 3.11. >

제16조의2(포상 및 보상 등) ①공공기관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표 2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포상하거나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한다. 다만, 보상금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근감사위원이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임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11.]

제16조의3(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공사에서 처리한 부조리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추천서(별지서식 제2호)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조리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조리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사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11.]

제17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분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3.11]

제18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부조리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신고사무처리 및 기록의 관리

제20조(신고사무처리 원칙)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를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의 접수, 조사, 보고, 징계요구 등 신고사무처리를 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규정에 의한 기안용지의 사용 및 문서 수발신 등을 생략하고 간이결재 형태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기록의 보존 등) ①신고사항의 처리에 관련된 각종 기록의 보관, 보존관리는 책임관이 담당한다.

②책임관은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련된 각종 기록을 신고자의 신분누설 등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신고기록의 보관, 보존관리 및 폐기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서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및 허가) ①신고자, 신고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은 감사실에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책임관은 열람 및 등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신고관계인의 신분노출 및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책임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인이 진상조사나 감사를 위한 목적으로 신고기록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열람·등사의 방법) ①기록의 열람·등사는 책임관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책임관은 보존사무 담당직원을 열람에 참여시켜 기록훼손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의 경우에 따라 감사를 위한 목적으로 외부 감사인이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책임관이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규정의 개정으로 「내외부 신고사무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은 폐지한다.

부칙<2016.1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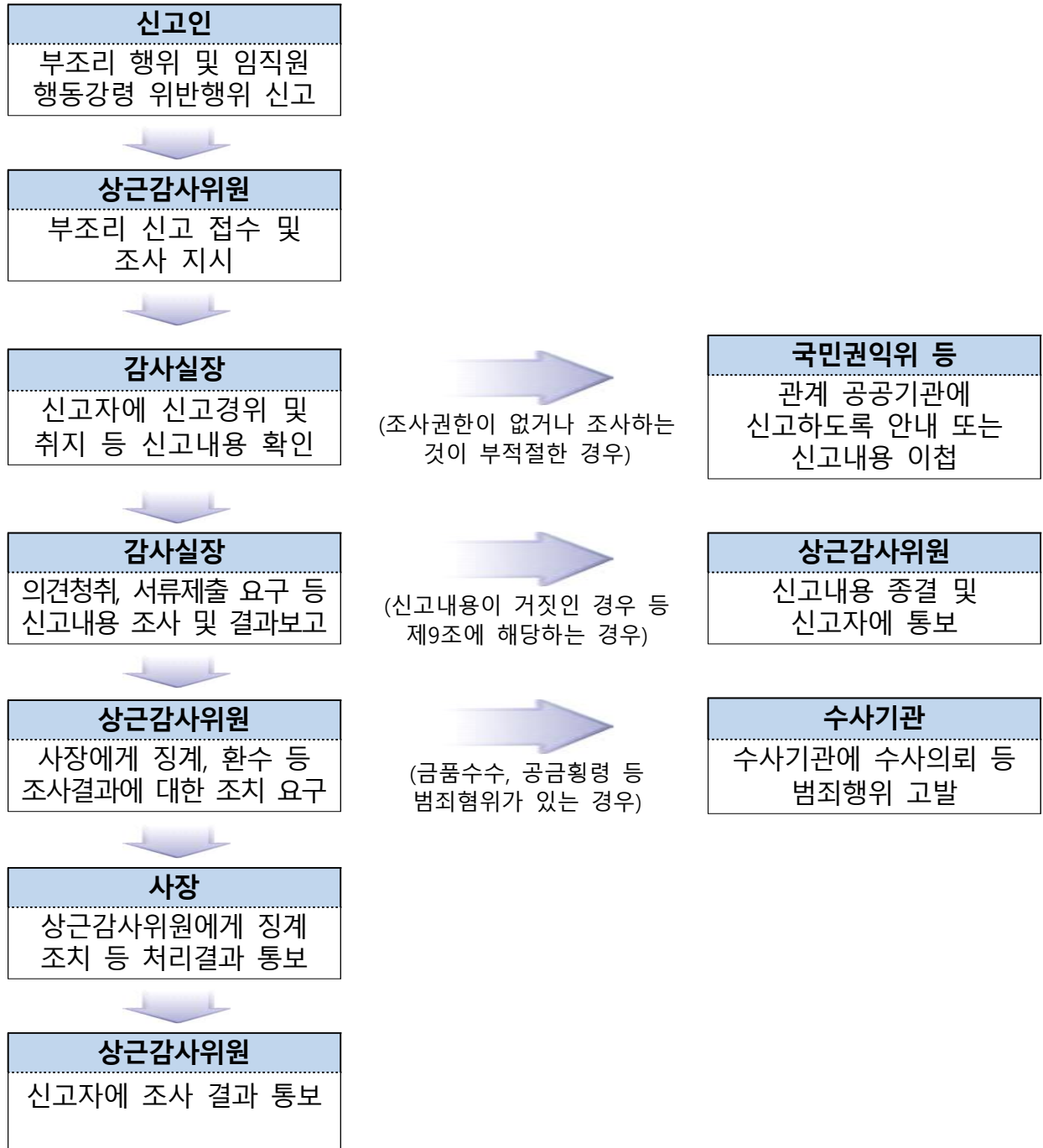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11.>

이 규정은 2020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조리 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별표 2] < 개정 2020. 3.11. >

보상금 등 지급기준(제16조의2 관련)

1.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보상한도액 : 최고 20억원)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자의 처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 견책 : 500만원 • 감봉 : 1,000만원 • 정직 : 3,000만원 • 면직 : 5,000만원

※ 보상대상가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가져온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한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한 금액 또는 물품이 있는 경우
2.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에 의하여 공사에 환수된 금액 또는 물품이 있는 경우
3. 부조리 행위 신고로 인하여 절감된 예산의 금액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처분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한 금액 또는 물품이 있는 경우

2. 금품 수수행위 신고(보상한도액: 최고1억원)

구분	지급기준	비고
타인의 금품 수수행위 신고시	수수금액의 200%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 수수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자신의 금품 수수행위 신고시	수수금액의 100%	금품수수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신고시 보상하되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3. 보상사유가 중복발생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지급액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표 3] (제10조, 제11조, 제15조 관련)<신설 2016.11. 2> <개정 2020. 3.11.>

부조리행위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구 분	보호의무 위반 내용			비 고
	제10조제2항 위반	제11조제3항 위반	제14조제2항 위반	
고의로 위반한 자	정직	감봉	견책, 계고	
중과실로 위반한 자	감봉, 견책	견책, 계고		

※ 위반행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양정기준보다 낮은 징계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별지서식 제1호](제10조 관련)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전화번호	사무실) 자택)		
		휴대전화)		
	주소			
신고제목				
신분공개 동의여부	동의 (), 부동의 () ※ 신분공개에 동의하셔도 신고자의 신분사항은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신고자의 최소의 정보만이 공개됩니다.			
신고서 접수번호	제 20 - 호		접수일자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주택도시보증공사 상근감사위원 귀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직업(직위)			
	[] 내부 신고자		[] 외부 신고자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조사결과	신고 접수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 없음	(기관명 :)	
	수령여부	[] 있음 [] 없음	(금액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